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729 제출연월일: 2024. 10. 1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'정당한 사유'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,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'정당한사유'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호 중 "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"를 "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"로 한다.

제28조제1항제7호 중 "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"를 "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공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	제21조(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
취소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	취소)
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	
을 취소할 수 있다.	<u></u>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	2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
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	<u> 휴업하여</u>
수 없게 된 경우	
제28조(등록취소 등) ① 시・도지	제28조(등록취소 등) ①
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	
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	
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	
수 있다. 다만, 제1호ㆍ제3호ㆍ	<u>.</u>
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	
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	
여야 한다.	<u>.</u>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7. <u>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</u> 1년	7.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
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	한 사유 없이
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	
사업을 휴업한 경우	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생 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